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025 발의연월일: 2024. 11. 28.

발 의 자:김태년・홍기원・정준호

박지원 · 김준형 · 김병기

전현희 • 이훈기 • 김영배

손명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권리의 주체와 객체의 관점에서 인(人)과 물건으로 이분화하면서, 인은 자연인과 법인으로 권리의 주체가 되고, 유체물 및 전기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물건으로 정의하여 인이 아닌 것은 물건으로 권리의 객체로 구분함. 이러한 이분법적 구분에 따라 동물은물건으로 취급되어 왔음.

그런데 최근 반려동물 양육인구의 증가 및 동물의 생명에 대한 존 이식이 커져감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 동물학대나 유기의 방지, 비인도적 처우의 개선 등 이른바 동물권 보호 강화의 요청이 확대되고 있어 현행법의 동물의 법적 지위가 국민의 인식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동물의 법적지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선언함으로써, 시대적 인식의 변화와 동물권 강화의 토대를 현행법

에 규정하려는 취지임(안 제98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8조의2(동물의 법적 지위) 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② 동물에 대하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98조의2(동물의 법적 지위) 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② 동물에 대하여는 법률에 특
	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
	<u>용한다.</u>